

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3. 7.
발 의 자 : 구미시장

1. 개정이유

- 의료업무수당안 통보(도 총무12151-11236(2003.6.17)호)에 의함
-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하는 의무직렬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

2. 주요내용

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【별표1】의 일반직의사의
의료업무수당 30만원 인상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개 정 전	월 609,000원 이하	월 518,000원 이하
개 정 후	월 909,000원 이하	월 818,000원 이하

- 적용시기 : 2003. 7. 1 부터

3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4조, 별표9의 제2호
- 의료업무수당안 통보(도 총무12151-11236(2003.6.17)호)

구미시조례 제 호

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(의료업무등의 수당) 【별표1】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중 “609,000원”을 “909,000원”으로 하고, “518,000원”을 “818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
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【별표1】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전문의</th><th>일반의</th></tr><tr><td>갑지</td><td>월 609,000원 이하</td><td>월 518,000원 이하</td></tr></table>	구분	전문의	일반의	갑지	월 609,000원 이하	월 518,000원 이하	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【별표1】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전문의</th><th>일반의</th></tr><tr><td>갑지</td><td>월 909,000원 이하</td><td>월 818,000원 이하</td></tr></table>	구분	전문의	일반의	갑지	월 909,000원 이하	월 818,000원 이하
구분	전문의	일반의											
갑지	월 609,000원 이하	월 518,000원 이하											
구분	전문의	일반의											
갑지	월 909,000원 이하	월 818,000원 이하											